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가단50037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8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9.부터 2021. 9. 17.까지는 연 6%, 2021. 9. 18.부터 2022. 3. 30.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21. 1. 1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21. 1. 13. 접수 제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해린

별지